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4. 12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9. 4. 박성훈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4. 9. 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4. 11. 20.) 상정 · 제안설명
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4. 11. 22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
반영폐기)

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4. 11. 28.) 상정 · 소위심사
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박성훈의원)

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

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,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. 이와 관련,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·활용할 수 있으므로,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유인규)

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면, 재난의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다만, 현행법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·운용 주체로서 재난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소상공인재난지원 정책의 기본적 내용을 정하게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,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업무 종료 후 파기 의무 등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박성민 위원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민병덕의원·송기현의원·오세희의원·박지혜의원·구자근의원·박성민의원·박성훈의원·이철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.

대안의 주요내용은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,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6. 심사결과

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(대안반영폐기).